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숭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60 발의연월일: 2020. 8. 14.

발 의 자:최승재·권명호·지성호

이명수 · 박덕흠 · 김예지

정진석 • 이종배 • 이주화

김희국 • 윤주경 • 송석준

이철규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의 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, 영업손실 등으로 휴·폐업에 내몰리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.

그러나 법률에는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피해복구 등에 대하여 융자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코로나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 장진흥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피 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의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1항제22호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기금	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
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	
여 사용할 수 있다.	
1. ~ 22. (생 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22</u> 의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
	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
	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
	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
23. (생 략)	2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